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4511 판결 [주식매매대금등청구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45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1455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액셀시어(담당변호사 김기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신용진, 임태완, 조영수)

판 결 선 고 2021. 10. 28.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14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으로 원고의 주식 수가 줄어들었으며 그 후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원고의 계약상 의무인 주권교부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수량만큼의 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